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7-30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3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18누6613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
원고, 항소인 영농조합법인 A

[redacted]

피고, 피항소인 [redacted]시장

[redacted]

[redacted]

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. 8. 9. 선고 2018구합63199 판결

변 론 종 결 2019. 2. 21.

판 결 선 고 2019. 3. 7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6. 7. 1. 원고에게 한 취득세(본세 및 가산세)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7-30

356,960,200원, 농어촌특별세(본세 및 가산세) 51,827,020원, 지방교육세(본세 및 가산세) 45,129,110원의 합계 453,916,330원의 지방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2쪽 11, 12줄의 'E' 부분과 5쪽 5, 13, 16, 18줄의 각 "J" 부분을 각 "C"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.

2. 결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문용선

판사 문주형

판사 이수영